

투자일임계약서

_____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이하 "회사" 라 한다)는 고객의 증권 및 증권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임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 3 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 주식 관련 증권
3.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개되는 주식
4.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정금리부 금융투자상품
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D, CP 등
7.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예치금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
2.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임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1]에서 정한 투자일임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② 고객은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입하며,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기 시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한다.
-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계약 만기 전 해지 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고객계좌 수익률을 연간수익률로 환산(이하 "연환산수익률"이라 한다)하여 산출한 성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④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감액 시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선취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단, 증액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객과 회사의 상호 청구 금액은 우선 상계 처리하고 잉여청구가 가능한 측이 상계 후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 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고서 제출)

- ①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매 분기 1 회 이상 투자일임자산의 투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제출, 설명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 2. 투자자의 투자성향
 -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 4.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 현황
 - 5.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제 9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객의 의견 및 투자일임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된 고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1]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운용결과의 귀속)

계약자산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3 조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제 14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
4.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제 15 조 (계약기간)

- ① 계약체결일은 고객과 회사가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 한다.
- ②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 1]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③ 유효약정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1주 전까지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 또는 회사는 [별지 1]의 계약기간 중에도 10일 전에 서면 예고로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 또는 투자지침 등 본 계약에 부수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의 투자일임사항을 정지시키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이 경우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단, 고객의 계약변경(해지포함)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까지 회사가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7 조 (계약개시,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 18 조 (고객의 운용지시)

고객은 리스크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 섹터 또는 종목의 매수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고객이 회사에 대면·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제 17 조의 현금 이외의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 계약 해지 시는 해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따른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위 1 호 외의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 20 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계산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19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단,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단가로 계산한다.
- ②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신주)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금배당의 경우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된 경우에 수익(배당수익)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당의 권리를 획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이 예상하는 예상 배당금 수령액을 운용성과에 기산하여 평가한다. 단, 예상 배당금이 실제배당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용성과를 재평가하여 기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수령한다.

제 21 조 (자산보관수탁자의 선정 등)

- ① 투자일임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업무는 고객이 별도의 계약으로 선정한 회사(이하 '수탁회사')로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수탁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행하며, 수탁회사로부터 이 계약에 관한 조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 18 조 및 제 19 조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및 순자산가치의 산정 등은 지정된 수탁관리사의 방식에 따른다.

제 22 조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제 23 조 (투자기준 및 절차)

회사는 기업방문 및 다양한 투자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토의를 거친 후 운용전략 수립, 주식편입비 결정, 종목 선정 등을 한다.

제 24 조 (이해상충방지체계)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자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계약위반의 효과)

- ① 고객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부수한 투자일임 운용지침 등에 명시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고객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부수한 투자일임 운용지침 등에 명시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금융소비자보호(적합성의 원칙) 관련사항)

- ① 회사는 고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하 한다)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될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동조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 27 조(금융소비자보호(설명의무) 관련사항)

- ① 회사는 고객이 금소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 2 항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투자성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회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수수료, 계약해지, 해제 관련사항, 계약기간, 예상손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 28 조(금소법 준수 등)

